

OECD

가입과 한국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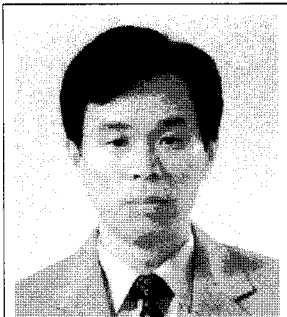
-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선진경제권 진입의 출발점

OECD 가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1995년 3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96년 10월 OECD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1996년 12월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 타결이후 환경, 경쟁, 노동, 부패 및 투자 문제 등이 차기 다자간 협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MERCOSUR(남미남부공동시장) 등과 같이 지역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각국의 정책방향도 검토해야 하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윤 호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 시점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OECD 가입이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들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였거나 또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출발점인 것이다. 그리고 OECD 가입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세계경제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 가입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는 농업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간의 경제협력기구

그러면 OECD는 어떤 기구인지 살펴보자.

OECD는 1961년 창설된 선진국간 경제협력 및 정책협의를 하는 국제기구로서, 설립 당시의 회원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의 18개국과 미국 및 캐나다 등 20개국이었다. 그후 일본, 핀란드, 호주 및 뉴질랜드가 가입하였고 이어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합류하였다. 이러한 회원국의 구성을 볼 때, OECD는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의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자유무역의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즉, 회원국의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확대에 공헌하는 것이다.

OECD의 활동영역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다. 이러한 활동은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실질적인 토의를 하는 위원회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농업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26개가 있고, 각 위원회 산하에 200여개의 실무작업반 및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OECD의 활동은 첫째, 회원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본질 규명 및 그 해결책과 함께,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며 둘째, 사회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셋째,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연례회의 전에 협상의 전 단계로서 회원국간의 의견 교환 및 필요시 공동해결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정책 협의 및 발전도모

우선 OECD/농업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위원회는 OECD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국간 농업정책에 대한 협의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회원국간 농업과 식량정책의 조화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며, 회원국의 농업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수급전망을 하고, 종자인증, 트랙터의 검사기준, 과채류의 표준 등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이 경제·사회정책 등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농업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득보조정책, 가격지지정책, 무역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정개혁에 관한 사항 즉, 시장지향도의 제고와 농업보조의 감축효과 분석 및 이에

이민CD

대한 회원국의 활동도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유럽국가의 농업생산, 소비 및 무역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련의 농업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체계의 차이로 인한 경제 및 환경적 특성, 생산자 및 소비자 등 각종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농체계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활동은 UR 협상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OECD는 1982-87년 기간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이 농업보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조 삭감이 생산, 소비, 무역 및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국이 농업보조를 축소하면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면서 농산물 공급과잉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기초로 1987년 5월의 각료이사회는 각국이 농업보조를 삭감하면서 농업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농정개혁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UR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OECD는 UR 협상에 앞서 회원국간 공동해결책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농업부문 외국인 자본 유입 우려

이제 OECD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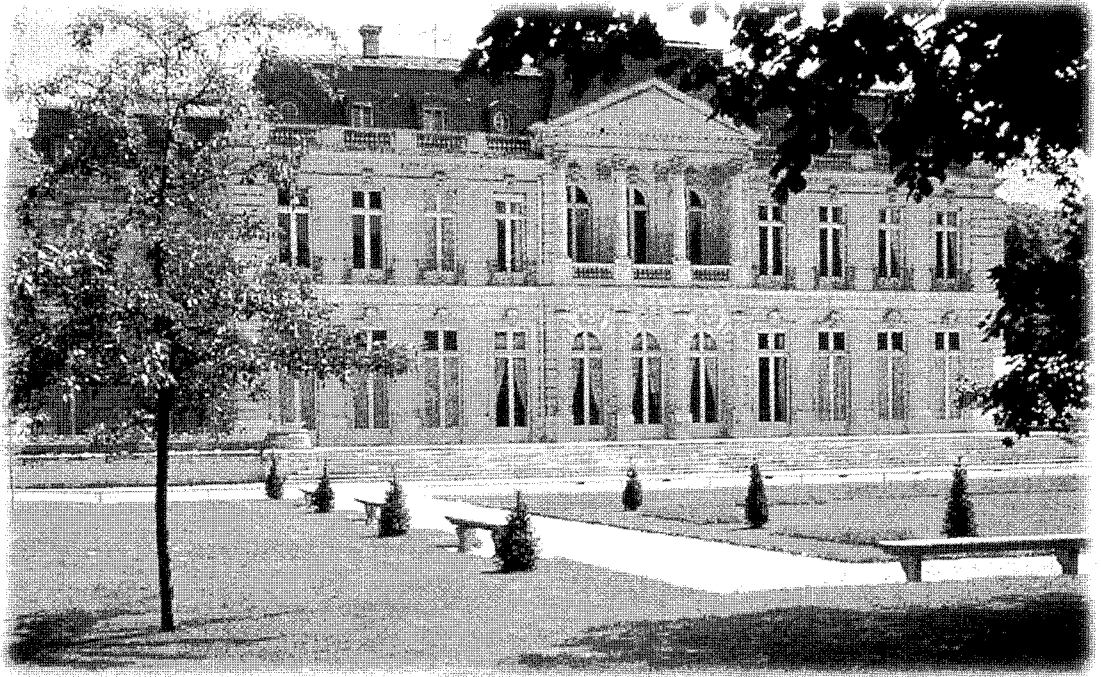
OECD 가입의 영향은 가입에 따른 의무 및 농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입에 따른 일반적 의무와 관련된 영향은 OECD 규범의 준수와 분담금의 부담이 있다. OECD 규범은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나 유보도 가능하므로 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다(12개의 농업관련규범중 농업용 트랙터 코드의 일부에는 1995년 12월 가입함). 분담금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권고적 의무중 공적개발원조의 확대가 문제로 지적되나, 이는 우리의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는 원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개도국들이 농업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시 농업부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 의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유통과 가공부문에 외국인 자본의 유입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 온다 함은 농업도 투자할 만한 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 올 경우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동시에 유입됨으로써 유통과 가공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농업금융분야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농업금융기관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시장의 기반과 전문성이 취약하여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경쟁력까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도시에서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으나 농업금융기관의 기반은 중소도시와 농촌으로써 시장의 중복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금융기관간(예, 은행간)에는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농업



세계경제의 운영전략 수립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OECD의 본부 건물. 프랑스 파리에 있다.

금융기관은 농업금융기관의 특성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농업금융기관은 패배감에 젖기보다는 이를 재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정적 영향에는 대안 찾아야

농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선진국의 농업 정책 및 운용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수하여 그 장점을 농정에 활용하고, 다자간 농업정책의 방향을 사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세계농산

물 수급상황 등 OECD의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종자인증, 과채류의 표준, 트랙터 코드 등 OECD 제도의 운용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면서 수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농업 및 무역정책에 관한 협의로 농업정책에 대한 자율성 제약 및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가능성과 농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및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상실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긍정적인 영향은 추상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적인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시장 및 무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국의 농업보조 수준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농정의 자율성 제약 또는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UR 농산물 협상은 각국의 농업정책을 협상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농무성은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예:PSE/CSE)을 발표하였다. 또한 권고의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뿐이며, 권고가 있다해도 그 내용은 농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화하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환경문제도 OECD내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중의 하나는 OECD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정부는 OECD 활동에 있어서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나, 농업분야는 예외로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정의 체결 시에 개도국으로 임한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였고, 국제통상현안에 있어서도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입의 득실을 논하기보다는 가

입이후의 대책에 중지를 모으는 일이다.

우리 농업 발전의 계기 삼아야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인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선진경제권의 진입, 그리고 경제 운용의 자율화·국제화 등과 부합하는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단축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중요한 일은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OECD의 활동을 통하여 가입추진시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일이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농업위원회의 활동 즉, 농업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작업, 향후 추진할 작업 등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OECD는 수많은 회의로 운영되고 문서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다량의 문서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OECD의 운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와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와 관련 기관들의 OECD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OECD 업무에 전념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OECD가 수행할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에 관한 국별검토보고서(Country Review)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OECD 가입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농업정보**